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·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(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).
-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(안 제17조제3항 신설).
- 시·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15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안 제23조의15에서는 시·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

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대체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,

시·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등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를 보완¹⁾하는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23조의15(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) <신 설>	제23조의15(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) <u>③ 시·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1. 납세자의 인적 사항 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1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6조(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, 사업규모,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,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(加重)하거나 감경(減輕)할 수 있다.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1. 납세자의 인적사항
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
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
④·⑤ (생 략)

(전문위원 이 화 실)